

D.GR.PU-13CEGK.06 DOCUMENT

Page 1 of 8



구매계약 일반조건

1. 적용범위

- 1.1.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명시된 본 구매 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함)은 본 계약 상대방사자에게 공개된 것이며 AT&S Korea Co. Ltd. (“AT&S Korea”)의 구매거래에만 적용된다. 본 “조건”에 적용법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 법이 적용된다. 본 “조건”은 AT&S Korea와 체결된 각 구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공급자”와의 모든 장래 계약관계 및 추가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뿐 아니라, 해당 시 AT&S Korea와 “공급자”(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함) 간에 성사되는 모든 장래 합법적 거래에 대한 기본 합의가 된다.
- 1.2. “공급자”의 일반조건은 (해당 시) (이하 “GTC”라고 함) AT&S Korea가 그러한 조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각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AT&S Korea와의 해당 계약을 제안하거나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자”는 GTC, 특히 “공급자”의 항변 조항의 적용을 포기하게 된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급자” 일반조건 등 일부라도 본 “조건”과 상충되는 모든 여타 조건은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 1.3. AT&S Korea는 1.2항에 명시된 대로 “공급자”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이의가 제기하지 않고 상품/서비스를 수락한다고 하여 AT&S Korea가 GTC의 일부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1.4. 본 “조건”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할 수 없다.

2. 주문, 오퍼, 구매주문, 주문 수락

- 2.1. AT&S Korea의 각 주문에 따라 개별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는 개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특정 주문을 “공급자”가 의뢰 받은 여타 주문에 적법하게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기본계약에 의해 약정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 2.2. AT&S Korea가 오퍼를 한다고 해서 AT&S Korea에게 구속력이 가해지거나 비용 또는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 “공급자”는 오퍼를 했을 때 AT&S Korea의 질의서, 입찰참가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수량, 품질 및 사양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AT&S Korea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자산의 오퍼에 대하여 AT&S Korea가 그 오퍼를 받은 후 3개월간 해당 오퍼에 구속된다.
- 2.3. 서면으로 의뢰한 구매주문은 AT&S Korea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케이스 별로 AT&S Korea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전화 또는 이 메일을 통하여 구두주문이 허용된다.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구두에 의한 약정은 추후 AT&S Korea가 서면으로 확인을 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급자”는 구매 주문을 AT&S Korea가 주문을 받은 후 3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확인하여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그 시점부터 AT&S Korea가 구매주문서에 명시한 선적기간이 계산된다. “공급자”가 주문을 받은 후 3영업일 내에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AT&S Korea는 해당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AT&S Korea는 “공급자”가 당해 주문을 확인한 후에도 “공급자”에게 적절하고 “공급자”가 수락하는 경우 납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 특히 납품비용의 가감 및 납품날짜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2.4. AT&S Korea의 구매주문 번호 및 서신 참조번호/날짜는 모든 통신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가격, 대금지급, 송장

- 3.1. 구매대금은 이해 가능한 계산에 근거하여 정한다. AT&S Korea가 구매대금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AT&S Korea에게 대금산정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3.2. 구매주문서 또는 오퍼에 명시된 가격은 최대 가격인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의 조달시장 변동에 따른 구매대금 감액분은 AT&S Korea에게 전액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공급자”는 조달시장에 그러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AT&S Korea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3. 통관세, 세금, 법률서비스 비용, 운송료, 포장비용, 보험료 또는 오퍼나 주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여타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모든 구매대금에 있어서, 달리 명시적으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부가세법(개정 포함)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구매대금은 개별로 서면에 의해 다른 선적조건이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원화로 결제하며, DDP, 조립 및/또는 사용 장소 및 /또는 납품장소 (Incoterms 2000) 인도 조건으로 지급한다.
- 3.4. “공급자”는 환경친화적 포장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그러한 포장재료를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AT&S Korea에게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D.GR.PU-13CEGK.06 DOCUMENT



Page 2 of 8

- 3.5. AT&S Korea는 “공급자” 대리인이 AT&S Korea를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해 주지 않는다. “공급자”는 제품소개, 시험운행(특정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을 AT&S Korea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실시한다.
- 3.6. 적절히 작성되지 않고 제출된 송장(청구서)은 수락될 수 없으며, 그러한 송장이 온전히 수정될 때까지는 대금이 지급될 수 없으며 AT&S Korea가 당해 송장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때때로 적용되는 법령에 정해진 회계관련 규정은 예외 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청구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적 또는 결과적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2.4항이 적용된다.
- 3.7. AT&S Korea는 주문 이행을 하자 없이 완료 한 후 30일 내에 3%(현금) 할인된 송장을 수취하거나 이러한 감액이 없이 송장을 수취한 후 60일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할인이 일정한 비율로 명시되는 경우, 2.3항에 명시된 대로 실제로 납품된 수량 또는 변경 또는 재협상된 가격 및 추가 서비스에 적용된다. 대금 지급기간은 당해 물품이 AT&S Korea 구내 또는 상호 합의된 장소에 도착한 후에 시작된다.
- 3.8. 공급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수락(구두 또는 서면)하거나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수락이 성립될 수 없으며, 그러한 수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로 간주할 수 없다. “공급자”가 당해 계약에 따라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AT&S Korea는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당해 지급을 보류할 권리를 갖는다.

4. 선적, 포장, 리스크 이전

“공급자”는 적출통지서(제품유형, 수량 및 중량 별로 세분하여 명시되어야 함)를 통하여 각 선적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AT&S Kore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송통지서, 양도 통지서, 송장 및 제반 여타 통신문에는 AT&S Korea 구매주문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AT&S Korea는 주문한 개수나 대수만 수락한다. AT&S Korea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만 선적 시 과부족이 허용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재료검사 증명서는 선적의 필수부분이 되며 선적 시 선적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5. 납품, 납품지연, 의무이행 장소, 불가항력

- 5.1. “공급자”는 적시에 주문한 수량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AT&S Korea는 합의된 날짜 이전에 선적하거나 주문수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물품은 “공급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반송할 권리를 갖는다. 물품이 조기에 납품되었거나 과다하게 납품된 경우, 반송되지 않은 물품은 약정된 선적일 전까지 “공급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AT&S Korea가 보관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기 납품의 경우, 이러한 경우 AT&S Korea는 약정된 지급 기일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T&S Korea는 사전에 AT&S Korea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 5.2. 각 선적 물품에 동봉되는 납품통지서에는 당해 구매에 따른 각 선적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및 AT&S Korea 구매주문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납품된 물품에 적절한 납품통지서가 동봉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 물품은 수락될 수 없다.
- 5.3. 양 당사자는 각 주문에 대해 합의된 납품날짜를 준수하여야 한다. AT&S Korea가 명시한 수취 또는 사용하는 시점에 물품을 수취하는 것과 이러한 물품을 적시적이며 온당하게 수락을 하는 것은 당해 납품일 또는 납품기간의 승낙에 관련되어야 한다. 납품기간은 구매주문을 의뢰한 날부터 계산된다.
- 5.4. “공급자”가 이유를 막론하고 합의된 납품날짜를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AT&S Korea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이유와 예상 지연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급자”는 전술한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접 및 간접적인 손실에 대하여 AT&S Korea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AT&S Korea가 지연된 납품을 수락한다고 해서 그러한 납품지연을 근거에 따른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없다.
- 5.5. “공급자”가 합의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AT&S Korea는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통지한 후 동 기간 동안 납품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대체품을 공급받거나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6. “공급자”는 AT&S Korea가 주문한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 및 그 국가의 기타 수입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통보해 주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동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5.7.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은 AT&S Korea의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장소(주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선적을 하기 전에 구매주문서 상의 주소로 연락하여 납품장소를 문의해야 한다.
- 5.8. 불가항력적 사유나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일방 당사자가 계약 수행이 방해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양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그러한 변동상황에 맞추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AT&S Korea는 주문한 물품/서비스가 불가항력적 사유나 노동쟁의로 인한 선적 지연에 따라 상업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한 물품/서비스를 수락해야 하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고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6. 수락

- 6.1. AT&S Korea는 각 계약에 따른 상태로 공급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함이나 수량부족이 없고 결함이나 수량부족이 시정된 경우에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락한다. 시험운행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AT&S KOREA는 당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합의된 전체 시험기간 동안 사양 파라미터에 도달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후에 수락한다.
- 6.2. 원칙적으로 전술한 수락은 AT&S Korea가 수락통지서에 서명했을 때 효력을 갖고, 각 구매주문은 전체적인 계약이행이 된다.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AT&S Korea는 전체 구매주문에 대한 수락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구매주문서에 중고품을 요청한다고 명시되지 않은 한, “공급자”는 AT&S Korea에게 신품만 공급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6.3. “공급자” AT&S Korea이 6.2항에 명시된 대로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완전히 수락을 할 때까지 그러한 서비스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7. 벌칙금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AT&S Korea는 그러한 지연이 “공급자”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증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총 주문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연기간에 대하여 일일(역일 기준) 0.5%를 벌칙금으로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전술한 벌칙금은 주문금액에서 납품이 지연된 부분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단, 적시에 그 중 납품된 부분은 별도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공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 벌칙금은 총 주문금액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AT&S Korea는 특히 “공급자”와 별도로 합의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그러한 벌칙금을 송장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AT&S Korea는 계약이행 대신 벌칙금을 청구하거나 벌칙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선적 지연으로 특정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향을 받는 경우, AT&S Korea는 자신의 재량으로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두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명시적으로 정한 납품 날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공급자”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증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총 주문금액의 15%를 벌칙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AT&S Korea는 선적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벌칙금 외에 추가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전술한 벌칙금은 감액될 수 없다.

8. 하자보증, 보증, 손해보상, 제조물배상책임

- 8.1. “공급자”는 납품한 제품의 소유권과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자”는 각 주문에 따른 계약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장하며, 이러한 이행은 당해 납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기술/설계 및 문서(도면, 플랜 등)와 관련하여 납품된 물품의 수준 및 유용성뿐 아니라 최신성에 따라 AT&S Korea가 작성한 사양 및 여타 이행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동가능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4개월이며 고정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60개월로 하며 이러한 기간은 계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전술한 보증기간은 6.2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AT&S Korea가 수락보고서에 서명을 했거나 당해 물품이 AT&S Korea에게 납품되었을 때 이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결함이 수리되면 보증기간은 그 시점부터 다시 개시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하여 가동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가동에 중단된 기간만큼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당해 보증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AT&S Korea는 자신이 그러한 결함을 시정하거나 유예기간 없이 “공급자”의 비용으로 제 3자를 통하여 수리를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절차로 인해 그러한 결함에 근거한 AT&S Korea의 권리가 약화될 수 없다. “공급자”가 상반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공급자”는 납품 시 존재하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단 이러한 결함은 납품 후 2년 내에 명백해 질 때)는 것으로 간주한다.

- 8.2. “공급자”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하도급자를 대신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8.1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전적으로 보증한다.

각 주문에 따른 납품 및/또는 서비스는 당해 주문 또는 착신전환 통지에 부합하며 결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이며, 특히 통상 예상하거나 약속되었을 수도 있고, 공개진술서에 언급되어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속성에 부합하며, AT&S Korea가 요청하는 견본 및 피검물, 기술사양, AT&S Korea가 통보하는 목적지와 판매시장에 적용되는 관련법과 정부규정에 부합한다.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은 시시때때로 수정되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품질수준 및 각각의 국가의 품질수준, 환경, 안전, 제품 표준 그리고 모든 통상적이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표준 (e.g. CENELEC, EN, ETSI, ISO, ITU, DIN, VDE, UL, ICAO)과 판매 목적지에 적용되는 관련법령과 정부규정 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지침서에 부합한다.

D.GR.PU-13CEGK.06 DOCUMENT



Page 4 of 8

그 밖의 AT&S Korea의 권리 특히 하자보증이나 손해배상을 근거로 한 클레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8.3. AT&S Korea는 납품된 제품을 검사하고 결함을 “공급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결함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면 그러한 결함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당해 보증기간과 지급기간은 보류된다.
- 8.4. AT&S Korea는 시정 가능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그러한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결함수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와 비용에는 AT&S Korea에게 발생한 포장비, 운임, 선적비용, 조립/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및 수리비도 포함된다.
- 8.5. 전술한 사항과는 별도로, “공급자”는 결함으로 인해 상실된 이익 등 AT&S Korea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AT&S Korea 고객과 같은 제3자가 결함이나 선적지연을 근거로 AT&S Kore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AT&S Korea에게 변상해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그러한 손해를 야기시킨 여러 가지 이유가 결함된 경우에도 그러한 결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 AT&S Korea는 자신에게 발생한 총 손실에 대하여 변상을 받으며 “공급자”는 관련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손실에는 그러한 손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손실과 관련된 항변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 내 또는 그 외 장소에서 AT&S Korea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8.6. “공급자”는 자신과 “공급자”의 법적 승계인을 위해 납품된 물품에 설계, 기술상 결함이 없으며 주문서에 있는 지시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특히, “공급자”는 당해 제품이 시장에서 매대된 시점에 최신성에 따라 어떠한 결함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한다. AT&S Korea가 당해 제품을 수락한 후에 결함이 발견되었고(되었거나) 그 제품이 당해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급자”는 AT&S Korea로부터 결함제품을 회수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한다. “공급자”는 시장에서 당해 제품을 모니터 하기 위해 “공급자”의 법적 승계인을 통하여 시장에서 당해 제품을 관찰해야 한다.

“공급자”는 당해 제품의 일부 성분이 위해가 된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된 경우에는 AT&S Korea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AT&S Korea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공급자”는 제기된 모든 클레임이나 손실에 대하여 AT&S Korea에게 변상해 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또한 “공급자”는 AT&S Korea가 요청하는 경우 당해 제작사나 수입자 명의로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자”는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AT&S Korea가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조건의 제조물배상책임 및 일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AT&S Korea가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보험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품질보증

- 9.1. 모든 납품과 서비스는 당해 주문서에 명시된 품질등급(최소한 ISO 9001:2008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당해 주문에 특정 품질등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은 1등급 이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안전 규정(법규, 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또한 AT&S Korea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납품과 서비스를 당해 가격에 포함시켜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주문서에서 달리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주문에 대하여 신품이며 최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9.2. “공급자”는 AT&S Korea 또는 AT&S Korea가 지정한 사람이 “공급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공급자”의 시설과 구내에 있는 “공급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통보하여 전술한 조치의 효율성을 충족시키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공급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하도급자 및 상위 공급자(해당 시)에게도 적용된다.

- 9.3. 주문한 물품의 납품하기 전에 AT&S Korea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AT&S Korea에게 합의된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AT&S Korea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실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특히, 지정된 목적에 대한 무조건적 부합성과 주문서에 명시된 성분에 대한)를 제출하여야 한다.

AT&S Korea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당해 계약(구매주문)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AT&S Korea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보고서는 지체 없이 AT&S Korea의 요청과는 별도로 AT&S Kore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REACH

- 10.1. 화학약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규제(REACH)와 관련한 유럽 규정 1907/2006에 따라서, 유럽 공동체 내의 제조업체와 제품(화학약품, 혼합물 및 기타 물질)을 들여오는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대상인 화학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혹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업체별로/수입자별로) 생산하고/혹은 수입 할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 예외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등록 의무가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

D.GR.PU-13CEGK.06 DOCUMENT



Page 5 of 8

EU 국가 외에 위치한 AT&S 공급자는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예약 등록되거나 등록된 제품만 납품해야 한다.

공급 업체가 정보, 등록 및 / 혹은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T&S는 언제라도 즉시 발주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무상으로 납품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 10.2. 유해성이 매우 우려가 되는 화학 물질(SVHC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의 경우 Candidate List(후보 물질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 이 리스트는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가 주기적으로 릴리즈하며 업데이트 한다. AT&S 공급자는 Candidate List에 등록된 화학물질이 생산, 수입하는 제품 및 AT&S에 공급하는 제품에 들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해당 화학 물질이 중량비로 0.1%를 초과할 경우 공급자는 AT&S에 서면으로 즉각적으로 보고 할 의무가 있다. Candidate List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echa.europa.eu/chem_data/authorisation_process/candidate_list_table_en.asp.

고위험성 화학 물질은 REACH 규정의 첨부 14에 점차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일단 첨부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경우 시장에 판매할 수 없으며 회사가 허용을 허락하지 않는 한 정해진 날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AT&S 공급업체들은 ECHA가 허용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T&S는 위의 정보가 공급력 및 생산력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REACH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11. 환경 관련 화학 물질

AT&S “ 환경 관련 화학 물질에 대한 가이드 라인” (“ 가이드라인”)에 금지 및 규제 화학 물질이 정리 되어 있으며 AT&S KOREA 공급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AT&S Korea 공급자는 AT&S에 “ AT&S 환경 관련 화학 물질 인증서” (“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인증서에는 금지 및/혹은 피해야 할 화학 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며 있을 경우 농도를 표시해야 한다. 인증서 및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AT&S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ats.net/en/index.php/Suppliers/c-13234-Downloadcenter.html>.

12. RoHS 준수

공급자는 2002/95/EC 유해 화학 물질 사용 규제(RoHS)를 준수해야 한다.

AT&S Korea가 구입한 자재 및 제품에 납 (Pb), 6가 크롬(Cr 6+), 수은(Hg), PBB 및 PBDE 물질의 경우 0.1%, 카드뮴(Cd)은 0.01%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위에 언급한 물질이 AT&S Korea가 구입한 제품 혹은 자재에 포함될 경우 공급자는 AT&S Korea에 서면으로 납품전에 보고해야 한다.

13. 독점적 권리

“ 공급자”는 납품이 제 3자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과 특히 납품된 제품을 인도하고 사용하는 것은 제 3자의 특허권, 라이선스 또는 여타 지적재산권이나 독점적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없으며 장래에도 그러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 공급자”는 AT&S Korea 또는 AT&S Korea의 고객에 대하여 제 3자가 전술한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AT&S Korea에게 변상하며 (법률서비스 비용 포함) 그와 관련된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T&S Korea는 납품된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 공급자”의 비용으로 허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4. 소유권

- 14.1. AT&S Korea는 납품을 받아 수락을 한 후에는 선적된 물품에 대한 비제한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선적물품에 대한 후속 변경, 개작/개선은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 공급자”가 납품 시 제공한 문서에도 적용된다. 또한, AT&S Korea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제한적 권리를 갖는다.

납품을 통하여 “ 공급자”를 자신이 당해 물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 공급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 3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물품은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언명하고 보증한다.

- 14.2. 당해 주문을 실행하기 위해 AT&S Korea가 “ 공급자”에게 인계했거나 비용을 지급한 도면, 스케치, 도구, 보조물, 견본, 모델 등은 경우에 따라 AT&S Korea의 자산으로 남거나 AT&S Korea의 자산이 되며, 이러한 문서 등은 제3자가 접근할 수 없으며 당해 계약 이외의 여타 목적이나 광고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문서, 도구 등은 AT&S

D.GR.PU-13CEGK.06 DOCUMENT

Page 6 of 8



Korea 자산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된 물품이 분실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AT&S Korea에게 그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급된 재료를 가공, 변경하여 다른 제품과 혼합시키는 경우, AT&S Korea는 그 결과물(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공급자”는 AT&S Korea를 위해 그러한 새 물품을 AT&S Korea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 14.3. AT&S KOREA가 “공급자”에게 인계한 문서는 AT&S Korea의 권리로 남는다. “공급자”는 모든 사본이나 복제 본 등 문서는 AT&S Korea가 요청하면 그 즉시 AT&S Korea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AT&S Korea가 인계한 문서는 당해 계약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결과로 AT&S Korea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비물질적 손해 포함)에 대하여 제한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15. 데이터 보호

“공급자”는 자신이 얻게 되는 데이터 및 그러한 데이터의 획득을 통하여 얻는 결과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알게 된 경로와 상관없이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전술한 데이터를 제 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하며 자신의 직원도 동 데이터를 이와 같이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16. 친환경적 포장

- 16.1. AT&S Korea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통상 무역에서 사용하는 재생 포장상자를 반환 받아야 한다. AT&S Korea가 사전 서면 승낙을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는 포장상자를 AT&S Korea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반환 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AT&S Korea시설에서 서비스(예: 수리, 전문가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포장상자, 폐기재료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당해 물품에 비정상적인 종류나 수량의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AT&S Kore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2. AT&S Korea와 “공급자”는 “공급자”가 폐기 처분할 전기 장비를 반환해 가는 것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전술한 폐기 용 전기장비를 수거, 처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러한 수거/처분과 관련하여 AT&S Korea에게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 주어야 한다.

17. 기타 조항

17.1. 적용 규격

모든 적용규격은 필요시 수정될 경우 AT&S KOREA는 Pool4Tool Portal에서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17.2. 공사 및 사양 문서

“공급자”는 본 계약 이외의 목적을 위해 납품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AT&S Korea의 문서를 이용, 복제하거나 제 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AT&S Korea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납품물품을 지칭하는 도면, 설계문서, 기술부분 계산 등을 AT&S Korea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문서가 승인된 후, AT&S Korea가 적절한 이용이나 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본 1부를 AT&S Kore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T&S Korea이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장 필수적인 예비부품 기록을 AT&S Korea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러한 플랜, 설계도면, 기술부분 계산 등을 승인 받는다고 해서 “공급자”의 보증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AT&S Korea에 대금이 청구된 금형, 도구, 도면 마스터 등은 지급이행과 동시에 AT&S Korea의 자산이 된다.

전술한 도구 등은 “공급자”가 AT&S Korea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보관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AT&S Korea가 요청하는 경우 AT&S Korea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AT&S Korea의 특수목적 위해 물품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공사 문서는 납품과 동시에 AT&S Korea의 독점적 자산이 되며 “공급자”는 이러한 문서를 AT&S Korea가 의도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17.3. 비밀준수

“공급자”는 AT&S Korea과의 계약 체결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AT&S Korea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후에 광고자료 및 참조문 리스트에 AT&S Korea와 관련된 사업관계를 지칭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없고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상대방의 모든 상업상 또는 기술사항을 영업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공급자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AT&S Korea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비 물질적 손해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준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건 당 당해 계약금액(주문)의 50% 또는 한화 320,000 원 중 더 큰 금액을 AT&S Korea에게 최저 벌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7.4. 분리

본 구매일반조건의 일부 조문이 실효가 되고 (되거나) 실행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문은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17.5. 계약 종료

17.5.1. AT&S Korea는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급자”는 종료시점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가(사용하거나 취득한 재료비 포함)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에 의한 그러한 금액 이외의 청구는 배제된다.

17.5.2. AT&S Korea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유로 본 계약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 “공급자”가 중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 “공급자”의 자산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여 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개편 절차 신청.
- 어음결제 중지.
- AT&S Korea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인계한 경우.

AT&S Korea 이 “공급자” 귀책의 이유 또는 여타 중요한 이유로 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공급자”는 AT&S Korea 가 본 계약을 완전히 취소했을 때는 어떠한 지급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본 계약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14.4.1 항에 명시된 대로 지급을 받는다.

제 3 자가 이러한 근거로 AT&S Korea 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공급자”는 AT&S Korea 에게 변상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T&S Korea 가 정당화 되는 계약취소를 한 경우, “공급자”는 물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제품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AT&S Korea 가 “공급자”에게 당해 제품을 발송하는 시점에 “공급자”에게 이전된다.

17.6. 양도금지

“공급자”는 AT&S Korea 로부터 사전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는 각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어떠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AT&S Korea 에 대한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7.7. 상쇄 금지

“공급자”는 자신의 채권을 AT&S Korea 의 채권과 상쇄해서는 안 된다. 단,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과 AT&S Korea 가 서면으로 인정한 채권은 제외한다. AT&S Korea 는 모든 유형의 채권을 “공급자”의 계약상 채권 과 상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7.8. 합법적 승계

AT&S Korea 는 “공급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AT&S Korea 의 지분이 25%이상 되는 회사나 AT&S Korea 에 대하여 지분을 25% 이상 갖고 있는 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전술한 권리/의무를 양도한다고 해서 AT&S Korea 과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17.9. 서면 양식

AT&S Korea 에 보내는 모든 신고서, 통지문 등은 서면으로 작성된 원본문서이어야 하며 “공급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본 구매일반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경우, 동 문서는 전자적 양식으로 대체될 수 없다.

17.10. 납품날짜

납품날짜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과 관련된 합법적으로 생성된 결과와 상쇄하기 위해 유예기간 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17.11. 미성년 근로자 고용 금지

“공급자”는 납품된 물품은 전부 미성년 근로를 이용하지 않고 생산된 것임을 보장한다. 또한 “공급자”는 “공급자”의 모든 제작업체가 그들의 물품을 미성년 근로자를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17.12. 불법 금속 구입 금지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금속의 경우, “분쟁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으로부터 자원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분쟁 지역은 특히 비정부 군사 단체 혹은 불법 군사 체제가 운영하는 광산이 위치한 지역이며 불법 광산운동을 통하여

D.GR.PU-13CEGK.06
DOCUMENT

Page 8 of 8



취득한 이윤은 인권 남용, 심각한 환경 훼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절도 행위에 사용된다. 이에 공급업체는 불법 금속 공급 혹은 사용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실사 및 지속적인 공급망 모니터링을 받을 의무가 있다.

17.13. 폐자재 처리 업체에 운송

국제 법규에 따라서 폐자재는 폐자재를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인증 업체 혹은 인증 처리 작업자에게만 운송해야 한다. 위탁 업체는 폐자재 수거를 대행하는 동안 법적 허가 업체 혹은 폐자재 처리 인증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폐자재를 리사이클 및/혹은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7.14. 적용법, 재판관할지:

이 계약서 상의 또는 이 계약서와 관련 및 연계된 양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 논쟁 및 차이점들 또는 계약상의 위반에 대해서는 대한 민국 서울에서 대한 상사 중재 회의의 중재법 및 한국 법에 따른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중재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을 지닌다.

- 계약의무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Convention; BGBI. III 1998/208)
-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년 4월11일) (BGBI. 1988/96)

법령에 근거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양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무역관련 제소 건)의 전속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의무 이행을 중단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